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5 선고 2023가단5193587 판결 [매매대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전현정, 임희승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박주영

변 론 종 결 2024. 3. 11.

판 결 선 고 2024. 3. 25.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2.부터 2023. 6.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240,000원과 2023.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조명기구, 가구, 전기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E 등 6필지 지상에 고급 주거시설 ‘F’을 건설(시공사 G 주식회사)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공동시행사이다. 피고 D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 84.15%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H의 아버지로서 피고 회사들의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1. 3. 피고 회사들과 사이에 원고가 조명기구 및 이동형가구를 서울 강남구 I 소재 위 ‘F’ J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에 납품하고 피고가 대금 244,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2023. 2. 9. 피고 회사들과 사이에 원고가 조명기구 및 이동형가구를 이 사건 홍보관에 납품하고 피고가 대금 87,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들로부터 선결제를 받고 2023년 3월 초순경 해당 가구를 모두 납품하였다.

마. 한편, 위 홍보관 인테리어 기획을 담당하는 디자인 업체 ‘K’ 소속 L 팀장은 2023. 3. 23. 원고 M 과장에게 “금일 회장(피고 D)님께 컨펌 받은 가구내용 전달해드립니다! 다음주 초쯤 현장에 도착했으면 하고 미팅룸 스툴은 가구 들어오는 날 배치해서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가구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3. 3. 28. [별지] 기재 견적서의 가구들(이하 ‘이 사건 가구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홍보관에 운반하였고 당일 이 사건 가구들이 피고 D의 확인 하에 이 사건 홍보관에 설치되었다.

사. 원고 M 과장은 2023. 3. 28. 피고 B 주식회사 소속 N 파트장에게 “금일 입고 완료된 품목의 물품 공급 계약서 보내드립니다. 확인 후 연락 주시면 계산서 청구 발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별지] 기재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초안 및 견적서의 각 파일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아. N 파트장은 2023. 4. 13. 원고 회사에 “당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한 적 없으며 계약서 및 그 어떤 서류에도 당사의 날인이 되어 진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납품확인서도 당사의 확인된 바가 없으며 회수해 가 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기에 이들 안에 가구의 회수를 요청 드립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증인 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가구들의 매매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가구를 모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108,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D이 피고 회사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들의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는바, 피고 D이 피고 회사들의 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가 유추 적용되어 피고 회사들은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 D은 금액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결제하겠다고 했고 본인을 믿고 제품을 납품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구들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08,24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구의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가구의 홍보관 배치는 매매 교섭 내지 협상의 일환일 뿐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가구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립 여부

위 증거들과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이전 각 계약과 달리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전에 이 사건 가구들이 모두 포함된 견적서 송부 및 그에 기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이전 각 계약에서는 피고회사들이 납품 가구에 대한 선 결제를 거쳐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는 피고 회사들이 아무런 결제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 직원이 2023. 3. 28. 이 사건 가구들이 이 사건 홍보관에 운반되어 설치된 후에서야 비로소 이메일로 피고 회사들 직원에게 이 사건 가구들이 모두 포함된 견적서와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가구들을 홍보관에 먼저 이동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합치하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목적물과 가격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2023. 3. 28. 이 사건 가구가 홍보관에 설치된 직후 피고 회사들 직원에게 이 사건 가구의 각 가액과 총 대금을 견적서와 계약서 초안에 적시하여 송부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책정한 금액으로서 위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회사들과 의사합치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듯 피고 회사들의 회장이라 불리는 피고 D이 이 사건 가구의 납품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 D의 의사가 피고 회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들은 주식회사들로서 그 의사결정의 권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피고 D의 의사표시를 두고 피고 회사들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가구를 홍보관에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이 당일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이는 납품 목적물의 성격을 감안할 때 설치 후 구매의사를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표현대표이사 여부

보건대, 피고 회사들이 피고 D이 피고 회사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와 거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D의 지급약정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 이 사건 홍보관의 인테리어 기획 담당 업체인 ‘K’ 소속 L 팀장이 2023. 3. 23. 원고 소속 M 과장에게 “금일 회장(피고 D)님께 컨펌 받은 가구내용 전달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적이 있는 점, ㉡ 피고 회사들과 견적에 대한 확인이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홍보관에 이 사건 가구들을 운반하여 설치함으로써 납품을 마친 것은 대금 결제에 대한 누군가의 확인이 없으면 쉽게 단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결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대주주의 아버지로서 피고 회사들의 회장이라 불리는 피고 D의 결제 약속이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가구들을 납품 완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홍보관의 인테리어 기획을 담당한 업체 ‘K’를 운영하는 O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2차 제안서 가지고 회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렸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 납품을 하기 바라셔서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하겠다고 제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 D이 이 사건 가구들의 홍보관 내 설치를 확정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라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그 진술태도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위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D은 이 사건 가구들의 납품대금을 피고 회사들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들의 납품대금 10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금지급기일(납품일 2023. 3. 28.부터 2주 이내)이 경과한 2023. 4.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인 2023. 6.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

별지